

「2024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20.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사항 (필독)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 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9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4-22호) 최근 2년 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평가시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지원 내용 :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지원 규모 : 140백만원, 35개社 (공모일 기준)

○ 연구장비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이내 지원(창업 년수 : 공모일 기준)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지원금 400만원)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 80% 지원(자부담20% : 지원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30% : 지원금 400만원, 자부담 172만원)

※ 졸업제 시행 : 3회 수혜시 2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방식 : 수행기업 선(先)집행 후 후(後)지급(분기별 정산)

○ 2024.09.30.집행기준 연구장비 사용료 집행률에 따른 한도 차등(예산 소진시까지)

- 집행률 20% 미만 :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감300만원)

- 집행률 50% 미만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감100만원)

- 집행률 50% 이상~70% 미만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집행률 70% 이상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증200만원)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조정을 통한 지원비 잔액을 고려, 최대지원금 변동 가능

※ 증액 지원 기업 10월 15일까지 추가 연구장비 사용계획 접수 후 증액 고지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3. 20.(수) ~ 4. 19.(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gmltjs0333@gbsa.or.kr)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① 신청서 및 기술(제품)설명서	(첨부)서식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포함	egbiz.or.kr 접수
	③ 2022-23년 재무제표	재무제표	egbiz.or.kr 접수(2년치 제출)
	④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3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⑤ 기업 범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4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⑥ 기업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협약서	(첨부)서식 제4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① 국세 : 국세청홈텍스 ② 지방세 : 민원24	egbiz.or.kr 접수(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	⑧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포함
	⑨ 정부 R&D 사업비 삭감 증명서	R&D 사업비 확정 후 삭감 증빙 자료	사업비 확정과 삭감 공문 등 증빙 자료 필수 제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보조금(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수 있음.

- 공모일 [2024. 3. 20.(수)]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공모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 토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60점 이상기업)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용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평가방법 : 「선정 평가표(별첨참고)」에 따른 평가
- 선정안내 : 2024. 5월 1주차(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가산점 적용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 2점 가점 적용
 - 대상: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 소재지가 북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미제출시 적용 불가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
- 정부 R&D사업비 삭감 기업 : 2점 가점 적용
 - 정부 R&D 사업 확정 후 삭감 기업(증빙 자료 제출 필수)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공모일 기준 2년이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6

추진절차

절차		내용
① 안내공고(접수)	' 24. 3. 20.~4. 19.	· 연구장비 사용지원 모집 공고
② 선정	5월 1주차(예정)	· 선정 결과안내
③ 장비사용 신청	개별진행	· 선정 기업 자사 부담으로 장비사용 진행
⑤ 관련 서류 제출	개별진행(분기별)	· 운영 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⑥ 장비사용료 잔액 확인	24. 09. 30.	· 선정기업 장비사용료 확인 및 잔액 파악
⑦ 장비사용료 추가지원	개별진행(4분기)	· 집행률에 따른 추가 장비사용료 지원 · 운영 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7

기타사항

- 지원금 정산시 운영결과보고서 필수 제출(양식배포)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재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재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지원 졸업제 시행
 -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24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선정 취소)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신청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8

문 의 처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	031)888-6109	031)888-6117	gmltjs0333@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서식 1,2,3) 신청서 및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등
 (서식 4) 법 위반 사실확인서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법위반 기업 조회
 참고자료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			100
기업 (40)	국내/해외 특허, 규격인증	· 국내/해외 규격인증서 2점/건 · 국내/해외 특허 등록 2점/건, 출원 1점/건 ※ 최대 10점 인정	10
	창업 년도	· 창업 ~ 3년이내 (10) · 3년 ~ 7년 이내 (8) · 7년이상 (6)	10
	공공인증서 (2점/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 최대 10점 인정	10
	매출액 (재무제표 기준)	· 10억 미만 (10) · 10억 이상 ~ 50억 미만 (8)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6) · 100억 ~ 500억 미만 (4) · 500억 이상 (2) ※ 최근2년 매출액 평균 적용	10
기술성 (60)		· 외부평가위원의 제품개발 적합성(우수성, 독창성, 차별성) 및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60
가산점		· 경기 북부지역 소재 기업 -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증빙서류 필수 제출)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2
		· 정부 R&D 사업비 삭감 기업(증빙서류 필수 제출)	2